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정부는 10. 29(화) 국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동 법률을 2002. 11.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동 법률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계약 체결전에 가맹본부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법 제7조), 둘째,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가맹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으며(법 제10조), 셋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유예기간과 시정을 위한 문서로서 해지하도록 규정하고(법 제14조), 넷째, 가맹사업거래관련 분쟁을 사전에 신속하게 조정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실질적으

로 구제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법 제16조), 다섯째,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상담기능을 수행하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제도를 도입(법 제27조), 상담사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2003년 하반기 예정).

동 법률의 제정으로 가맹사업거래법의 제정·시행으로 과거 성행하였던 기만적인 가맹점모집행위, 거래중에 각종 불리한 거래조건의 강요,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가맹점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과정의 공정성 확보로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고, 또한, 법 시행으로 우수한 가맹본부와 불량한 가맹본부를 가맹희망자들이 구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이 조성되어 다양한 사업의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생산증대 및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실태조사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2. 11. 4부터 11. 30. 4주간 불법 다단계영업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개정 방문판매법의 시행(2002. 7. 1) 및 하위법령의 정비가 완료(2002. 9. 14)됨에 따라 주요 다단계판매업체의 법령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매출액상위 10개 업체,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 신고접수건수가 많은 업체 및 최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통신카드 다단계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반품·환불의 거부, 건강보조 식품·화장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표시광고, 판매원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허위·과장 표시광고, 계약서면 교부의무 미이행 등 방문판매법 관련사항 및 재판매가격의 유지행위, 우월적지위의 남용 등

공정거래법 관련사항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개정 방문판매법 준수 여부와 소비자피해실태를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후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 제6차 한·미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11. 14(목)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 톰슨(M. Thompson) 위원, 법무부(DOJ) 콜라스키(W. Kolasky) 독금담당 부차관보 등 미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한국측 수석대표 : 윤영대 부위원장).

이 협의회는 양국 경쟁당국자가 연례적으로 상호 교환방문 하여 경쟁법·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 및 관심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과 양국간 협력관계의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올해는 카르텔, 기업결합, 소비자보호, 다자 및 양자간 국

제협력 등의 경쟁정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미 양측은 국제카르텔 조사에 있어서 협력방안과 WTO 등 다자간 협의에서의 한미간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국제적 수렴과 미 경쟁당국의 심사분석에 있어서의 기술적 발전 등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11. 15에는 미 공정거래위원회 톰슨 위원을 초청,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국 경쟁정책의 집행경험과 운용방향에 대해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조선·기계·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보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기계·전기제품 제조업체와 부품·소재 납품업체가 하도급계약시 사용하게 되는 표준계약서를 개정, 2002. 11월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조선·기계·전기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을 원천적으로 개선하여 공정경쟁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며, 그간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제도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품·소재 납품업체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기술협력네트워크체제 구축과 함께 조립완제품 중심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의 성장거점이 전환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조선·기계·전기산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조선공업협회, 조선공업협동조합, 조선기자자재공업협동

조합, 기계산업진흥회, 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기산업진흥회, 전기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였다.

동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 사업자의 권익보호와 관련, 원사업자의 어음발행에 따른 부도 발생시 하도급사업자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성 결제수단인 기업구매카드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을 신설하고, 제조물책임법이 2002. 7. 시행됨에 따라 납품 목적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제조업체가 우선 부담하고, 부품업체

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조물책임조항을 신설(단, 기계업종은 이미 규정)하였으며, 기타 하도급법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의 명칭을 「조선업종 자재거래표준기본계약서」에서 「조선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로, 「기계류제조표준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에서 「기계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로, 「전기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에서 「전기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로 변경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시 제조업체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등 개정된('99. 2. 5) 하도급법의 규정을 반영하였다.

## 2002. 10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공정위는 2002년 10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을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10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2년 10월중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2002. 10. 1. 364개에서 2002. 11. 1. 현재 363개로 1개사가 감소하였고,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2. 10. 1. 364개사에서 2002. 11. 1. 현재 365개로 1개사가 증가하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2002. 11. 1. 현재 728개로 변동이 없다.

\*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외

2002. 10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2. 10. 1.	편 입			제 외						증감	2002. 11. 1.
		회사 설립	주식취득 및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전 체	728	1	4	5	1	-	2	-	2	5	-	728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364	1	2	3	1	-	1	-	2	4	-1	363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364	-	2**	2	-	-	1	-	-	1	1	365

\* 출자총액·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외

\*\* 「한국수자원공사」(2개사)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제외 반영 수치임

2002. 10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3개사(회사설립 1, 기타 2)

□ 제외 : 3개사(합병 1, 청산종결 2)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업종명	사 유	회사명	업종명	사 유
현 대 자동차	(주)엠코	서비스업, 건설업	회사설립	-	-	-
동 부	아남반도체(주)	반도체 및 집적회로제조업	기 타	-	-	-
	(주)그레텍	산업폐기물 처리업	기 타	-	-	-
엘 지	-	-	-	(주)심마니	온라인정보 제공업	피합병
에 스 케이	-	-	-	(주)모비아	컴퓨터운영 관리업	청산
제 일 제 당	-	-	-	(주)아이삼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

※ 출자총액·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현대자동차」, 「동부」, 「엘지」, 「에스케이」

※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채무제표 또는 연결채무제표를 이용하여 산정한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 하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으로 결합채무제표작성이 면제되므로 연결채무제표를 이용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한 결과 27.2%에 해당되어 지정제외 요건을 충족하여 동사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부터 지정제외하기로 의결하였다(2002. 10. 16). 「한국수자원공사」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부터 지정제외되더라도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된다.